

新 복지국가의 전략과 과제

- 중산층 10% 확대를 위한 과제: ③노후 소득 안정 대책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2. 8. 30 (木) 14:30~16: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 A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문진영 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서강대 교수)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방하남 한국연금학회 회장(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년 제5차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1. 일 시 : 8월30일(목) 오후2시30분-4시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ERI)
4. 大주제: **新복지국가의 전략과 과제 (연간 주제)**
 小주제: **중산층 10% 확대를 위한 과제 : ③ 노후소득 안정 대책**
 (※ 발표자와 사회자(4인)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例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중산층 확대를 위한 노인 복지 및 고령화 대책 .노인복지 및 노후소득 안정 대책 .고령자 소득 안정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대책	문진영 학회장 (사회복지정책학회 서강대)
주제 발표 2	10분	- 국민연금 등을 활용한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국민연금 적립 규모, 소득 대체율, 연금수급자 등의 추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확대 방안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노후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 제도개선 방안	최병호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제 발표 3	10분	- 중산층 확대를 위한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 및 정년 보장 실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실태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선진국의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방하남 학회장 (한국연금학회, 노동연구원)
종합토론			사회: 김주현 원장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I. 중산층 확대를 위한 노인 복지 및 고령화 대책

문진영 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헤럴드경제 월례세미나
2012년 8월 30일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문진영
(서강대학교)

Obedire Veritati

SOGANG UNIVERSITY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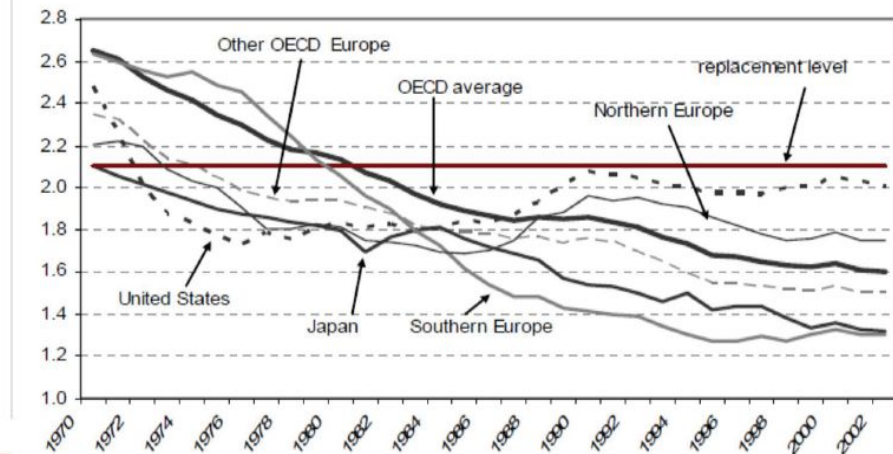
1. 저출산 고령화 현상
2. 한국 노인의 실태
3.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 3.1 공적 소득보장
 - 3.2 노인장기요양보험
 - 3.3 노인 일자리
4. 결론: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정책



1. 고령화사회의 노인

-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의 보편적인 현상임

<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동향



2012-08-29

3

<표> 지역별 고령화 동향(1950-2050)

		1950	1975	2000	2025	2050
Percentage of older ages(<65)	Africa	3.2	3.1	3.3	4.1	6.9
	Asia	4.1	4.2	5.9	10.0	16.7
	Europe	8.2	11.4	14.7	21.5	29.2
	Latin America	3.7	4.3	5.4	9.6	16.9
	N. America	8.2	10.3	12.3	18.7	21.4
	Oceania	7.4	7.4	9.9	14.4	18.0
	World	5.2	5.7	6.9	10.4	15.6
Old-age Dependency Ratio*	Africa	5.9	6.0	6.0	7.0	10.6
	Asia	6.9	7.5	9.2	14.9	26.1
	Europe	12.5	17.6	21.7	33.2	51.4
	Latin America	6.6	7.9	8.6	14.4	26.9
	N. America	12.7	15.9	18.6	29.6	35.5
	Oceania	11.7	12.0	15.2	22.7	28.8
	World	8.6	9.9	10.9	15.9	24.7
Ageing Index**	Africa	12.6	11.0	11.9	17.0	36.6
	Asia	18.5	16.8	29.0	64.3	135.7
	Europe	46.3	69.1	116.0	211.9	262.7
	Latin America	14.8	15.8	25.2	59.2	112.3
	N. America	45.6	57.7	75.5	137.2	148.3
	Oceania	37.5	35.4	52.7	89.6	120.2
	World	23.8	23.4	33.4	61.5	100.5

2012-08-2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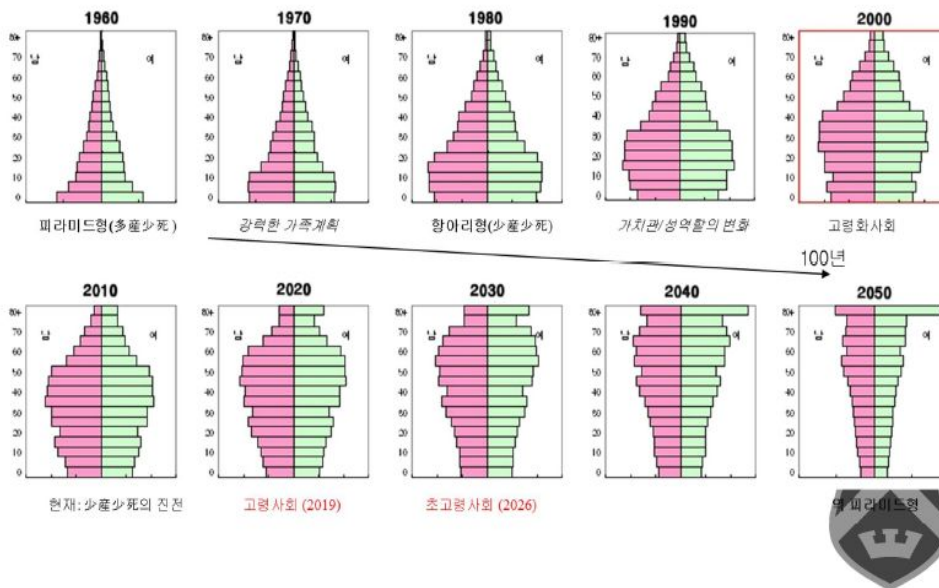
-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의 현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

		1975-1980	2002	2003
Life Expectancy (female)	Korea	68.5	79.0	79.3
	Taiwan	74.0	79.7	79.9
	Hong Kong	76.8	84.7	84.3
	Singapore	73.1	80.6	80.9
	World	67.6	74.9 (2000-05)	
Total Fertility Rates	Korea	2.9	1.17	1.19
	Taiwan	2.7	1.34	1.24
	Hong Kong	2.3	0.96	0.94
	Singapore	1.9	1.37	1.26
	World	3.1	1.8 (2000-05)	

2012-08-29

5

한국의 인구구조 변동 (1960-2050)



2012-08-29

6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Years reaching			Years taken	
	Ageing Society (7%)*	Aged Society (14%)	Super-aged Society (20%)	7%→14%	14%→20%
France	1864	1979	2019	115	40
Norway	1885	1977	2021	92	44
Sweden	1887	1972	2011	85	39
Australia	1939	2012	2030	73	18
USA	1942	2014	2030	72	16
Canada	1945	2010	2024	65	14
UK	1929	1976	2020	47	44
Germany	1932	1972	2010	40	38
Japan	1970	1994	2006	24	12
Taiwan	1993	2018	2026	25	8
Korea	2000	2019	2026	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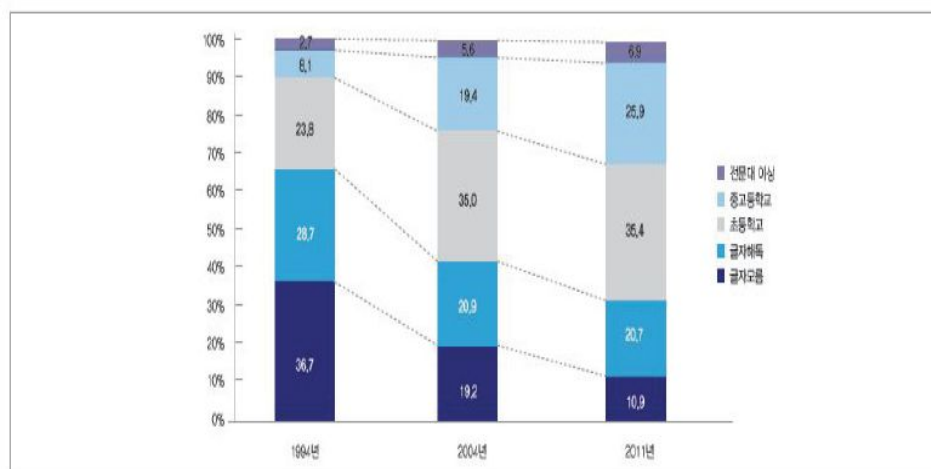
** Percentage of older persons (over 65)

*Source: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each year: Directorate 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ROC,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2004*;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OK, Aged Statistics, 2004 (in Korean).

2. 한국 노인의 생활실태

2.1 노인의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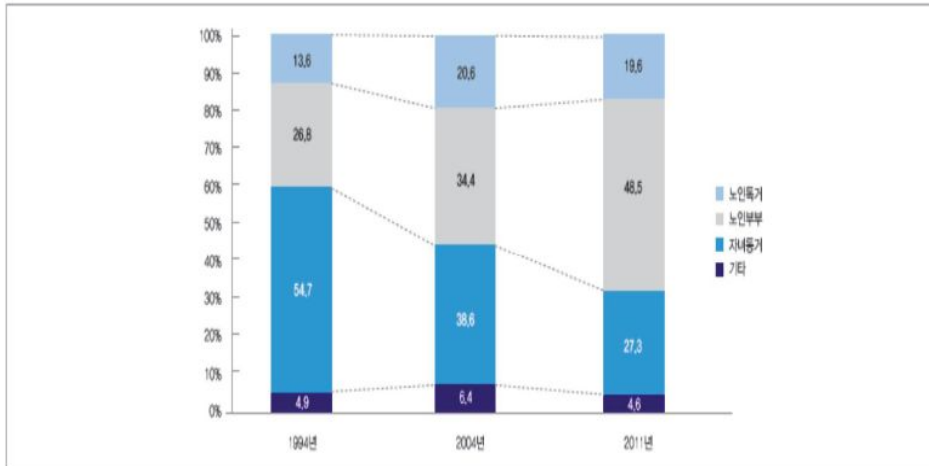
* 노인의 학력수준 변화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사연

2.1 한국노인의 일반특성

* 노인 가구의 형태 변화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사연

2012-08-29

9

2.2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

< 표 > 노인의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9.4	14.6	24.3	31.8	14.7	4.2	1.0	100.0 (10,153)
지역								
동부	10.7	16.2	24.1	29.8	13.2	4.7	1.3	100.0 (6,820)
읍·면부	6.7	11.4	24.7	35.9	17.9	3.2	0.3	100.0 (3,333)
성								
남자	9.7	14.9	24.4	31.7	14.2	3.9	1.1	100.0 (4,409)
여자	9.1	14.4	24.2	31.8	15.1	4.4	1.0	100.0 (5,742)
연령								
65~69세	10.3	14.4	23.3	31.0	15.9	4.1	1.1	100.0 (3,008)
70~74세	9.1	14.8	24.0	32.3	14.7	3.8	1.2	100.0 (3,150)
75~79세	8.4	13.9	27.5	31.5	13.5	4.1	1.0	100.0 (2,308)
80~84세	9.1	16.2	23.7	31.5	15.0	3.8	0.6	100.0 (1,108)
85세 이상	10.0	15.0	19.1	34.3	12.9	7.9	0.9	100.0 (581)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사연

2012-08-29

10

<표> 노인의 친구 이웃과의 왕래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달 1회	분기 1,2회	년 1,2회	왕래 없음 ²⁾	계 (명)
전체 ¹⁾	43.3	19.4	13.6	13.2	3.2	2.5	4.7	100.0 (10,521)
지역								
동부	34.0	20.4	15.4	16.8	3.9	3.2	6.3	100.0 (7,133)
읍·면부	63.0	17.3	9.8	5.8	1.6	1.2	1.4	100.0 (3,389)
성								
남자	36.4	18.4	14.3	17.7	4.5	3.5	5.2	100.0 (4,534)
여자	48.6	20.2	13.1	9.8	2.1	1.8	4.3	100.0 (5,986)
연령								
65~69세	39.1	19.4	14.4	17.5	4.1	2.4	3.1	100.0 (3,147)
70~74세	43.2	20.6	13.6	13.2	2.6	2.7	4.1	100.0 (3,216)
75~79세	48.1	18.0	13.4	9.7	3.4	2.5	4.9	100.0 (2,389)
80~84세	45.5	20.5	11.7	11.7	1.9	2.4	6.3	100.0 (1,158)
85세 이상	42.8	17.1	13.7	8.3	2.8	2.8	12.5	100.0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0.2	19.5	14.2	15.1	3.7	2.7	4.7	100.0 (7,103)
배우자 없음	49.9	19.4	12.4	9.3	2.0	2.2	4.9	100.0 (3,419)
가구형태								
노인독거	54.6	19.2	11.6	7.7	1.8	2.1	2.9	100.0 (2,086)
노인부부	42.6	18.3	14.6	14.5	3.1	2.6	4.3	100.0 (5,107)
자녀동거	36.7	21.6	13.4	14.9	4.2	2.6	6.6	100.0 (2,845)
기타	41.3	19.8	12.6	14.3	3.7	2.7	5.6	100.0 (484)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사연

2012-08-29

11

2.3 노인의 생활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건강상태	3.0	31.0	21.3	36.1	8.7
경제상황	1.0	16.9	37.2	35.8	9.1
배우자와의 관계	6.9	61.4	24.5	6.2	1.0
자녀와의 관계	6.5	67.0	20.0	5.3	1.2
성생활	1.3	28.8	43.6	17.1	9.2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사연

2012-08-29

12

<표> 노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특성	(단위: %, 명)					계 (명)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전체 ¹⁾	10.5	36.1	47.4	5.8	0.2	100.0 (10,542)
지역						
동부	11.4	35.9	46.2	6.2	0.3	100.0 (7,148)
읍·면부	8.6	36.6	49.8	4.9	0.1	100.0 (3,394)
성						
남자	8.7	33.1	50.7	7.1	0.4	100.0 (4,546)
여자	11.8	38.4	44.9	4.7	0.1	100.0 (5,995)
연령						
65~69세	7.6	32.8	53.5	6.0	0.1	100.0 (3,150)
70~74세	9.3	38.2	46.7	5.6	0.1	100.0 (3,227)
75~79세	12.8	37.0	44.7	5.0	0.5	100.0 (2,390)
80~84세	14.1	38.8	41.9	4.9	0.2	100.0 (1,161)
85세 이상	15.8	33.9	40.0	9.6	0.7	100.0 (6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5	33.7	51.9	6.6	0.3	100.0 (7,121)
배우자 없음	16.8	41.2	37.9	4.0	0.1	100.0 (3,422)
가구형태						
노인독거	20.9	44.4	32.4	2.2	0.1	100.0 (2,086)
노인부부	7.0	34.6	51.1	6.9	0.4	100.0 (5,120)
자녀동거	8.1	32.9	52.4	6.5	0.1	100.0 (2,847)
기타	17.2	34.9	43.3	4.5	0.0	100.0 (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9.8	42.6	34.9	2.8	0.0	100.0 (1,144)
무학(글자배독)	15.6	42.9	38.3	3.1	0.1	100.0 (2,183)
초등학교	8.5	37.2	50.3	4.0	0.0	100.0 (3,742)
중·고등학교	7.2	31.0	54.5	7.1	0.2	100.0 (2,738)
전문대학 이상	3.5	19.6	52.7	22.0	2.2	100.0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6.6	35.5	52.7	5.2	0.1	100.0 (3,565)
미취업	12.5	36.5	44.7	6.1	0.3	100.0 (6,9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9	49.0	23.6	1.5	0.0	100.0 (2,112)
제2오분위	12.6	46.1	40.0	1.3	0.0	100.0 (2,120)
제3오분위	6.5	36.6	54.5	2.3	0.1	100.0 (2,100)
제4오분위	4.9	31.1	59.0	4.9	0.1	100.0 (2,114)
제5오분위	2.4	17.7	60.0	18.9	1.0	100.0 (2,095)

2012-08-29

13

2.4 노인의 경제상태

<표> 월평균 소비지출

특성	(단위: 만원, 명)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대상자 수
전체 ¹⁾	141.3	(10,659)
지역		
동부	155.6	(7,246)
읍·면부	110.9	(3,413)
성		
남자	152.5	(4,600)
여자	132.8	(6,059)

<표> 부담지출항목

특성	(단위: %, 명)						계 (명)
	식비	교육비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전체	12.0	6.5	43.0	24.7	8.3	5.5	100.0 (10,674)
지역							
동부	14.9	7.4	40.5	23.7	7.8	5.7	100.0 (7,257)
읍·면부	6.0	4.5	48.3	26.8	9.5	5.0	100.0 (3,418)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사연

2012-08-29

14

<표> 가구총소득 및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

특성	(단위: 만원, %)						총년수입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전체 ¹⁾	774.3	390.2	215.9	339.6	409.9	31.8	2,161.8
지역							
동부	972.7	318.4	265.4	354.6	457.8	27.4	2,396.4
읍·면부	353.1	542.8	111.0	307.5	308.2	41.1	1,663.7
가구형태							
노인독거	83.1	64.2	87.5	347.2	237.2	21.5	840.6
노인부부	228.7	360.1	274.4	386.3	510.9	37.3	1,797.7
자녀동거	2,253.0	687.8	206.5	238.4	346.1	30.9	3,762.7
기타	688.5	331.3	204.3	415.6	462.3	23.5	2,125.5
<구성비>							
전체	23.5	14.4	8.7	26.5	25.2	1.7	100.0
지역							
동부	28.5	8.9	10.1	25.7	25.4	1.4	100.0
읍·면부	13.1	25.9	5.6	28.3	24.7	2.4	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7.6	6.3	6.8	45.0	32.7	1.7	100.0
노인부부	11.7	17.2	11.5	28.7	28.8	2.1	100.0
자녀동거	56.0	15.5	4.9	9.7	12.8	1.1	100.0
기타	23.2	12.9	8.8	24.8	28.5	1.8	100.0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사연

2012-08-29

15

2.5 노인의 건강

특성	(단위: %, 명)					계 (명)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전체 ¹⁾	2.5	31.7	21.5	37.6	6.8	100.0 (10,540)
지역						
동부	3.0	32.3	21.5	36.3	6.9	100.0 (7,146)
읍·면부	1.4	30.4	21.6	40.1	6.5	100.0 (3,394)
성						
남자	4.1	39.9	20.2	30.0	5.9	100.0 (4,545)
여자	1.3	25.5	22.5	43.3	7.5	100.0 (5,994)
연령						
65-69세	3.7	39.7	20.9	31.0	4.7	100.0 (3,147)
70-74세	2.6	31.3	21.7	38.4	6.0	100.0 (3,228)
75-79세	1.5	25.8	21.8	43.1	7.7	100.0 (2,390)
80-84세	1.5	25.2	21.6	40.5	11.2	100.0 (1,161)
85세 이상	1.2	27.6	22.0	39.6	9.7	100.0 (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1	34.2	20.8	35.7	6.1	100.0 (7,120)
배우자 없음	1.1	26.4	22.9	41.5	8.1	100.0 (3,420)
가구형태						
노인독거	0.9	26.6	22.2	42.8	7.6	100.0 (2,084)
노인부부	2.5	34.0	21.1	36.0	6.5	100.0 (5,125)
자녀동거	3.5	31.0	21.8	36.8	6.9	100.0 (2,845)
기타	2.7	33.9	21.2	35.8	6.3	100.0 (487)



2012-08-29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사연

16

노인의 자살시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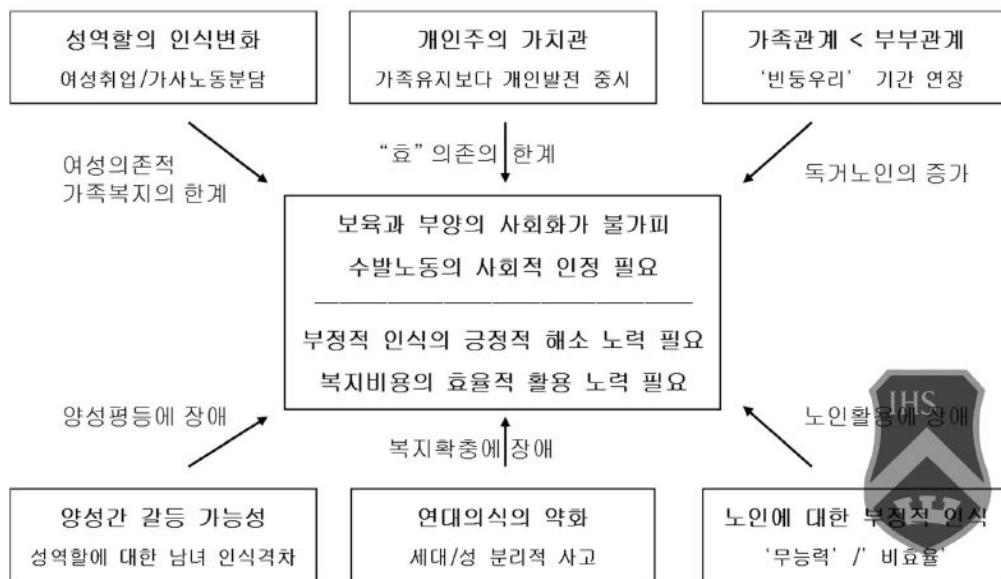
특성	자살 생각률 ¹⁾	자살 시도율 ²⁾	자살생각 이유 ³⁾							계 (명)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랑 배우자 가족·친구	부부 친구 갈등 및 단절	자녀 갈등	배우자 가족 건강	
전체	11.2	11.2	32.6	30.8	10.2	3.6	15.6	4.5	2.8	100.0 (1,181)
지역										
동부	12.2	11.9	31.5	32.5	11.3	3.2	14.2	4.2	3.0	100.0 (873)
읍·면부	9.1	9.4	35.7	26.0	7.1	4.5	19.1	5.2	2.2	100.0 (308)
성										
남자	9.9	12.7	34.6	34.1	10.2	2.0	13.5	2.5	3.1	100.0 (451)
여자	12.2	10.4	31.5	28.8	10.2	4.7	16.9	5.4	2.4	100.0 (728)
연령										
65-69세	11.1	14.8	32.8	31.6	7.1	3.4	16.2	5.1	3.7	100.0 (351)
70-74세	12.1	9.0	34.4	27.8	7.7	2.3	20.2	4.3	3.3	100.0 (392)
75-79세	11.5	11.0	27.0	36.9	16.1	4.0	10.6	4.7	0.7	100.0 (274)
80-84세	10.3	11.0	39.7	23.3	12.9	6.0	11.2	4.3	2.6	100.0 (116)
85세 이상	7.3	6.7	31.1	33.3	13.3	6.7	13.3	2.2	0.0	100.0 (4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9	10.3	38.5	29.0	7.1	0.7	16.2	5.1	3.3	100.0 (703)
배우자 없음	13.9	12.7	23.8	33.5	14.6	7.7	14.6	3.3	2.3	100.0 (478)
가구형태										
노인독거	15.1	11.8	21.8	35.8	16.8	8.8	12.3	1.9	2.5	100.0 (316)
노인부부	9.2	10.6	39.8	29.0	7.0	1.0	15.5	5.1	2.5	100.0 (472)
자녀동거	11.5	11.3	34.0	29.2	8.8	2.4	17.0	5.2	3.3	100.0 (329)
기타	13.5	12.3	25.0	28.1	7.8	1.6	25.1	9.4	3.1	100.0 (64)

2012-08-29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보사연

17

3. 노인복지 수요

<그림>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2012-08-29

18

<표> 노인의 실태(2009)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계	경제적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 없음	건강문제	의료용·소외감	가족으로부터 접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복지시설 부족	기타
		100.0	41.4	2.0	5.7	40.3	4.4	0.2	1.7	0.9	2.5

노후준비 방법	계	준비되어 있음							준비되어 없음	준비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준비되어 있음	소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		부동산 운용	기타 1)	소계		아직 생각 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100.0	39.0	100.0	29.6	11.4	11.5	4.1	28.0	14.1	1.2	61.0	100.0	2.6	3.5	54.4	39.5

생활비 마련방법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소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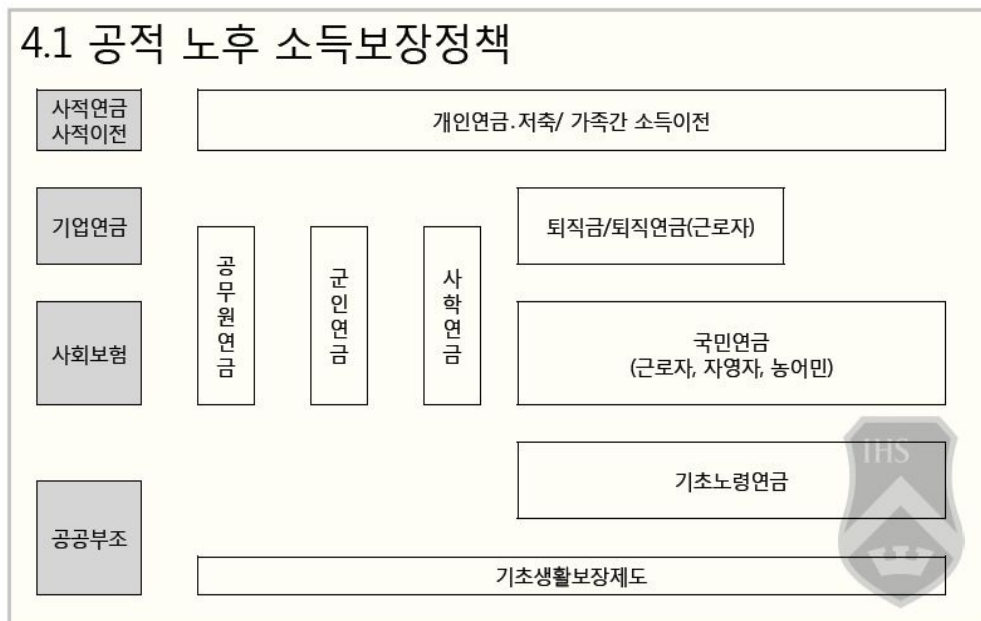
통계청(2010)

2012-08-29

19

4.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4.1 공적 노후 소득보장정책



2012-08-29

20

현행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 부실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
- 국민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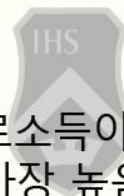


2012-08-29

21

부실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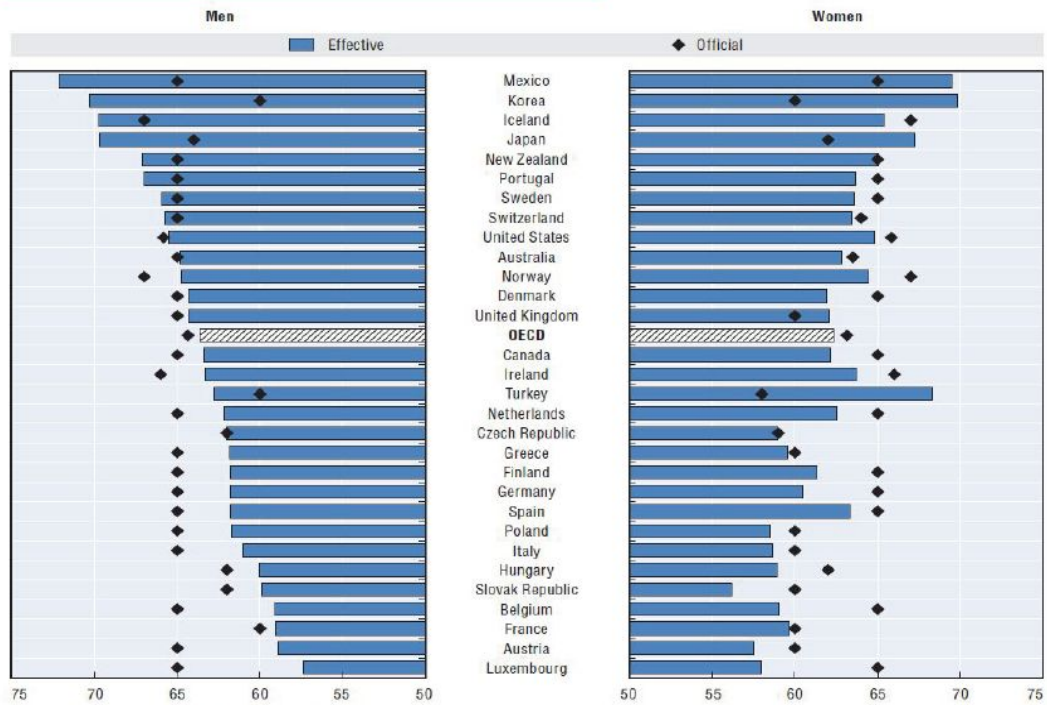
- OECD 국가군에서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의 소득원을 비교한 OECD (2009:60-61) 자료에 의하면 공적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public transfer 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60%수준에 이르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은 공적이전이 노인가구 가처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15.7%로 매우 낮음
- 당연한 결과로, 노인가구의 소득원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2012-0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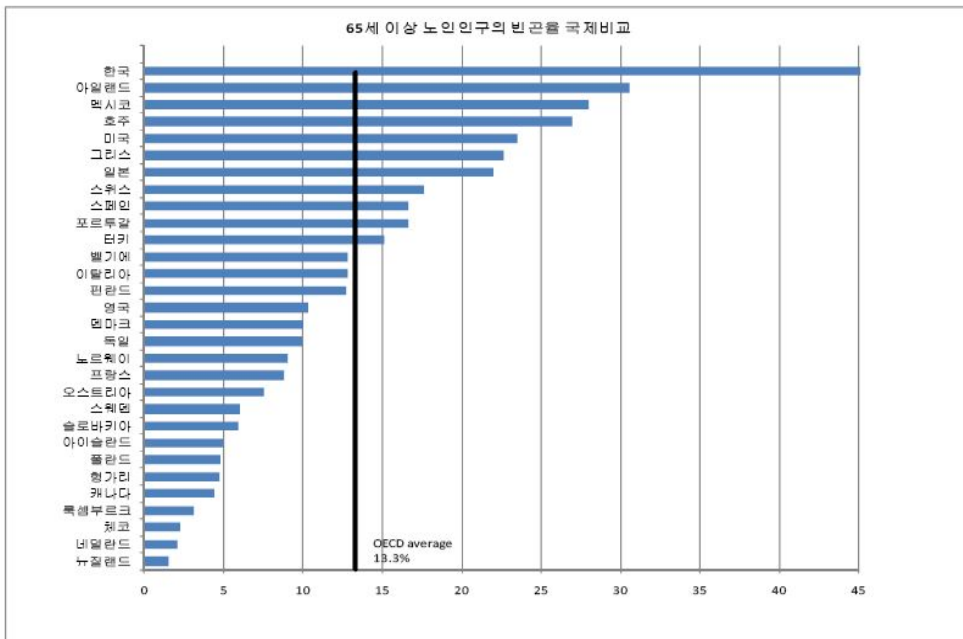
22

실제 노동시장 퇴출연령과 연금개시연령의 비교



Note: Effective retirement age shown is for five-year period 2004-09; pensionable age is shown for 2010.
Source: OECD, updated from OECD (2006).

<표> 노인인구 빈곤율 국제비교(중위 소득 50% 이하)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

- 왜 한국의 노인들은 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빈곤한가?
-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자가 적고 금액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 200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127만명),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총 143만 2천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27.6% 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평균 2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김연명, 2012).

2012-08-29

25

국민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는 (1) 적용의 사각지대와 (2) 실제 사각지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적용의 사각지대: 비경활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로, 18세 이상 59세 이상 인구 중 31.4%인 967만명
- (2) 실제 사각지대: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와 1년 이상 미납자,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비가입자로 취업자 2109만명의 33.8%인 713만명.

2012-08-29

26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18세 이상 59세 총인구 3,082만명(100%)						
경제활동인구 2,187만명(70.9%)						
비경제 활동인구 895만명 (29.0%)	실업자 78만명 (2.5%)	취업자 2,109만명(68.5%)				
		비임금근로자 533만명(25.3%)		임금근로자 1,576만명(74.7%)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71만명(41.3%) <small>(임금근로 지역가입자)</small>		국민 연금 미가입 80만명 (4.2%)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1,024만명 (48.6%)	특수 직역 가입자 125만명 (5.9%)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약 6만명 포함)	남부자 247만명 (11.7%)	남부예외 338만명(16.0%) 남부예외의 516만명				
공적연금 비가입자 967만명 (973만명-6만명) (31.4%)		미남자 108만명 (남부예외+미남 29.6%)				
적용의 사각지대	국민연금 수급 대상	실제 사각지대 713만명 (취업자 대비 33.8%)		국민연금 수급 대상	적용 제외	

2012-08-29

2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국민연금 가입률 차이

	기업규모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기업규모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4인	7.0	85.7	7.3		1-4인	73.7	13.0	13.4
	5-9인	2.5	96.8	0.8		5-9인	59.2	27.1	13.8
	10-29인	1.1	98.5	0.4		10-29인	47.4	41.6	11.0
	30-99인	1.0	98.7	0.3		30-99인	36.9	52.3	10.9
	100-299인	0.5	99.5	0.0		100-299인	30.5	63.4	6.1
	300인 이상	0.1	99.9	0.0		300인 이상	25.1	70.0	5.0
	전 체	1.3	98.0	0.7		전 체	54.4	33.8	11.8

2012-08-29

28

종사상 지위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 및 준비수단

구분		하고 있음	하지 않고 있음	합계(응답자수)
임금 근로자	상용직	97.7	2.3	100.0(1,310)
	임시직	59.6	40.4	100.0(332)
	일용직	25.0	75.0	100.0(373)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91.8	8.2	100.0(97)
	자영업자	66.2	33.8	100.0(596)

자료: 윤석명 외(2011)의 실태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국민연금	민간연금	저축	부동산 및 주식투자	자녀부양에 의존	기타	합계 (응답자수)
임금 근로	상용직	47.7	10.4	28.7	10.1	0.1	3.1	100.0(1,310)
	임시직	36.9	7.3	39.6	6.6	8.5	1.2	100.0(332)
	일용직	32.1	12.8	43.0	9.4	2.7	0	100.0(374)
비임금 근로	고용주	43.9	12.2	36.7	6.1	1.0	0	100.0(96)
	자영업자	39.3	13.4	34.9	11.6	0.3	0.5	100.0(597)

자료: 윤석명 외(2011)의 실태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임.

2012-08-29

29

퇴직금 제도의 문제

-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근로자는 99%가 퇴직금을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근로자는 26.2%만이 퇴직금 적용을 받고 있음(김연명,2010).
- 한편,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로 전환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퇴직연금가입근로자는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총 6,811,867명, 매월노동통계 '07년 평균)의 16.4%에 그치고 있음 (2008년 12월 기준).
-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임. 즉 퇴직연금은 안정된 정규직근로자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될지 모르지만 비정규직이나 소규모사업장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음.

2012-08-29

30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 사각지대 해소방안 강구: 취약계층 보험료 국고지원 및 연금credit 제도 등
-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
- 현행 연금급여 수준을 상향조정: 평균소득자가 평균적인 가입기간을 충족시켰을 경우의 연금수령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연금산식을 재설계하여야 함



2012-08-29

31

(참고) 기초연금안

구분	보편적 기초연금안	선별적 공공부조안
필요성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기초노령연금(무기여)과 국민연금 수급집단(기여)간 이원화 ▪ 누구도 세대간 재분배(기초연금)에서 배제되어선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기초노령연금의 포괄성은 크지만 급여수준이 낮아 노인빈곤해소 미흡 ▪ 장기 재정부담 축소와 효율적인 노인 빈곤완화 필요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 역할 배분 원칙 설정 - 세대간 재분배(조세): 기초연금 - 세대내 재분배(보험료):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체 노인에 대한 기초보장 및 1인 1연금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노인층을 겨냥하여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수급액 조정 - 수급률을 축소하되 급여수준 적정화 ▪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
재정에 대한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도입에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 감안시 그 정도 투자는 필요 - 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그 정도 재원투입은 국가의 역할 - 재정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기초연금은 막대한 재정 소요 - 급속한 고령화 감안시 지속가능하지 않음



김연명(2012)에서 재인용

2012-08-29

32

4.2 노인 장기요양보험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즉 2008년말 149,656명에서 2010년말 348,561명으로 2.3배 증가하였음.

<표>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2011년 12월말 현재)

구분	신청 자수	등급 판정 자수	등급판정 결과								
			인정자				비인정자(등급외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계	617,081	478,446 (100.0%)	324,412 (67.8%)	41,326 (8.6%)	72,640 (15.2%)	210,446 (44.0%)	154,034 (32.2%)	95,890 (20.0%)	42,258 (8.8%)	15,886 (3.3%)	
남	167,849	131,141	92,754	12,527	19,965	60,262	38,387	23,699	10,042	4,646	
여	449,232	347,305	231,658	28,799	52,675	150,184	115,647	72,191	32,216	11,24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월보(내부자료)

2012-08-29

3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과 한계

구분	내용	한계점
가입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정 등록장애인은 적용 제외
요양신청범위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 65세미만은 노인성질환자에 한정
요양인정범위	- 요양 1~3등급	- 등외의 비인정자는 제외
시설서비스수급범위	- 요양 1~2등급자, 또는 특정조건의 3등급자	- 일반적인 3등급자는 제한
재가서비스수급범위	- 요양 1~3등급자	
요양병원입원자	- 비급여대상으로 취급	- 요양 1~3등급자라도 장기요양급여 통제
기타	- 시설규모에 따라 필요서비스 제공에 차이 발생	- 소규모시설 입소자의 불이익 발생

2012-08-29

34

장기요양제도의 개선방안

- 첫째, 향후 장기요양제도는 대상자의 범위를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제도로 개선하여야 함
- 장기요양등급의 인정과 비인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케어욕구의 대응에 부합하는 형태의 서비스제공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기타 사회적 서비스제도간 원활한 연계체계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
- 노인요양시설규모의 적정화를 통해서 양질의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형태의 시설을 최소한 50인의 중규모시설 이상으로 적정화시켜야 하고, 영리추구위주의 시설공급을 지양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함

2012-08-29

35

4.3 노인일자리 사업

-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삼성경제연구소), 은퇴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노인형 일자리 제공'이라는 응답이 53.9%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은퇴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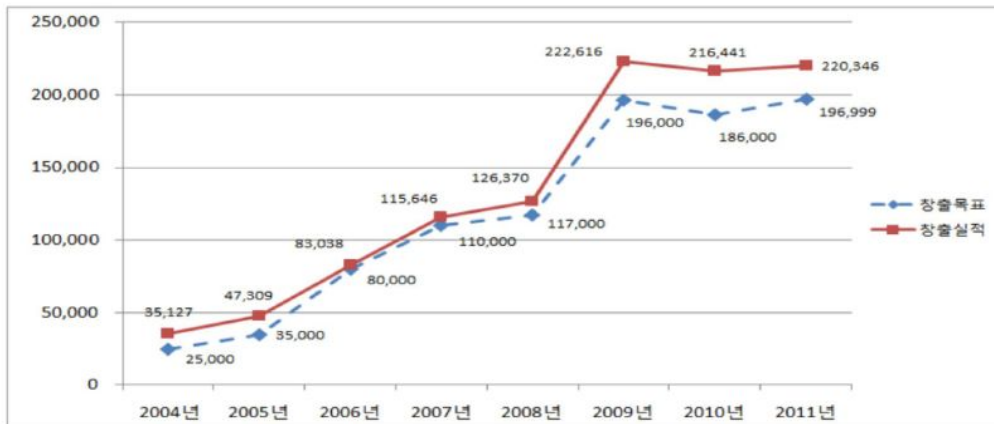
구분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형 일자리	의료비 지원	노인친화적 주거환경	사회적 유대 강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응답률	8.6%	53.9%	16.5%	6.2%	6.7%	10.1%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12).

2012-08-29

36

노인일자리사업 추이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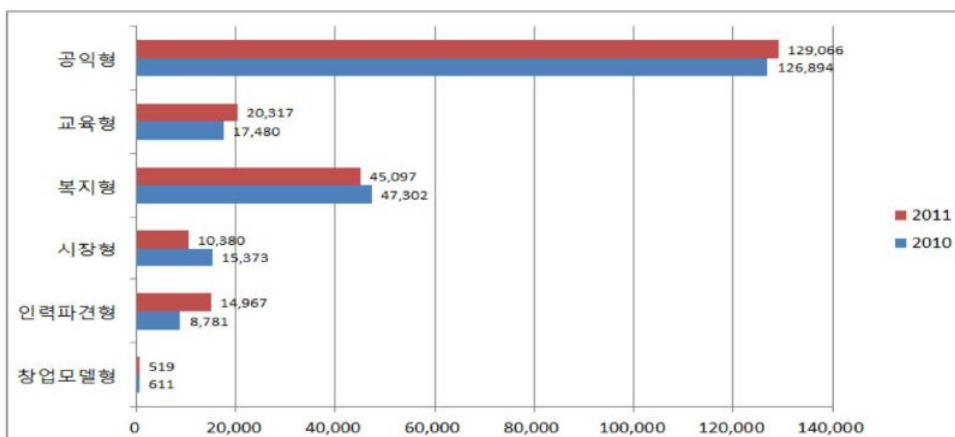
-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자생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상의 제약이 오자, 2010년 이후에는 답보상태를 보이는데, 이는 전형적인 예산 지원형 사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음

2012-08-29

37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 사업유형별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60%가 공익형 사업임. 이러한 이유로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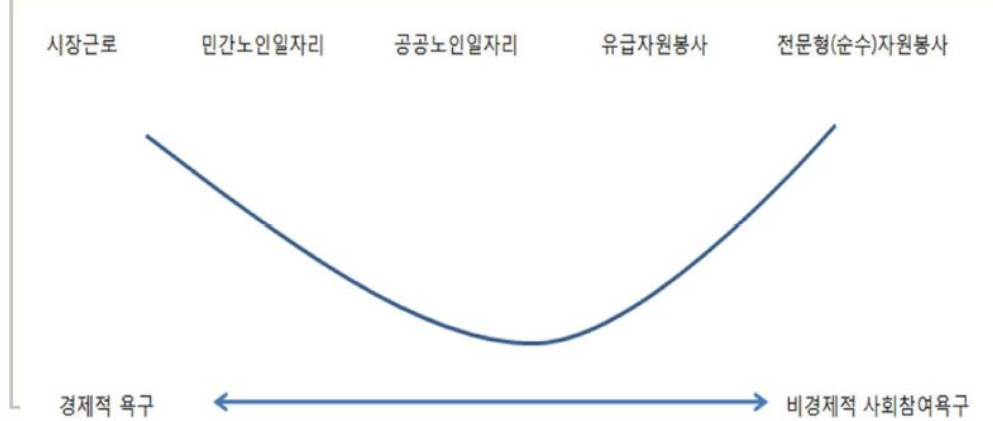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

2012-08-29

38

노인일자리사업 소득- 욕구 역전현상' 딜레마

- '소득-욕구 역전현상'이 일어남. 즉 생계비 욕구 대응 시도 사업(시장진입형) 보다 사회공헌형 사업에 소득욕구가 높은 노인(그리고 인적자본 수준이 더 열악한 노인)이 참여하게 됨



2012-08-29

39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일자리 희망노인 추정 규모는 1,160천명으로 현재 일자리 창출규모가 정책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을 감안할 때 충족률은 겨우 18.9%에 불과함.
- 따라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의 질적관리에 대한 집중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일자리의 질적 제고는 무엇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참여자 욕구에 기초한 사업유형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2012-08-29

40

생계비 마련과 사회적 가치 제고의 이원화

- 현재 복합적으로 설정된 생계비 마련과 사회적 가치 제고 목표를 이원화(double-track)시켜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체계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임.
- 소득보장 중심의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에게는 현 시점에서 받는 급여가 생계비로서 의미가 클 것이기 때문에 물가와 생활 실태를 반영한 급여액을 제공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사업 참여 이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즉 참여노인이 일시적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좋은 일자리 옮겨갈 수 있도록, 고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용지원 및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 함.

2012-08-29

41

노인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사업수행기관들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자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자치단체, 수행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교육서비스 제공기관, 수요처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상시적인 노인일자리 관련 협의체를 통해 지역중심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 단위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종합계획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의뢰, 자원 및 서비스 연계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고용, 일자리, 직업훈련(평생교육 포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노인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인일자리 관련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임.

2012-08-29

42

5.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과제

-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와 구체화가 필요함. 향후 노인의 고용, 노후소득보장, 돌봄과 여가가 점차 통합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에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함.
- 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함. 특히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이는 최근 문제가 되는 노인자살방지정책과 연결됨.
-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기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야 함.



II. 국민연금 등을 활용한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I. 노인(65세 이상)의 경제상태

1. 가구소득

□ 노인의 평균 가구소득은 2,161.8만원으로 월 180.2만원이며

- 가구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11.1%인 반면 300만원 이상도 16.7%가 되는 등 노인내 소득규모의 차이가 큼.

<표 1> 가구소득 및 지출액 규모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	(명)	월평균액
총가구소득	11.1	29.1	18.7	11.1	13.3	16.7	100.0	(10,674)	180.2
총소비지출	9.0	32.2	21.8	12.9	13.7	10.3	100.0	(10,674)	141.3

□ 가구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이 26.5%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25.2%, 근로소득 23.5%, 사업소득 14.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규모 및 구성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총년수입
소득액	774.3	390.2	215.9	339.6	409.9	31.8	2,161.8
구성비	23.5	14.4	8.7	26.5	25.2	1.7	100.0

<표 3>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원천별 소득구성

(단위: 만원, %)

총가구소득 그룹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총년수입
50만원 미만	소득액	23.3	16.7	20.1	196.9	198.3	8.9	464.2
	구성비	4.8	3.5	4.5	42.5	42.8	1.9	100.0
50~100만원 미만	소득액	75.9	100.8	67.1	353.6	264.8	16.4	878.6
	구성비	8.2	10.9	7.4	41.2	30.5	1.8	100.0
300만원 이상	소득액	2856.1	1146.5	656.2	309.2	745.0	62.2	5775.2
	구성비	50.2	17.4	11.2	5.8	14.2	1.2	100.0

-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1.3만원으로 총 가구소득 대비 10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도 20.1%에 달하고 있는 반면 70%만을 지출하는 경우도 19.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4> 가구소득 대비 지출액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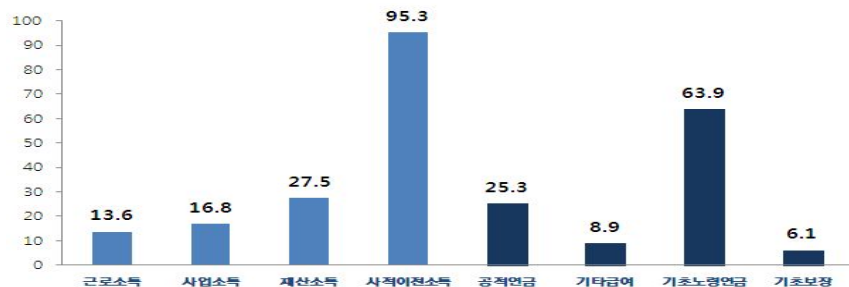
구분	70%미만	70~80%미만	80~90%미만	90~100%미만	100%이상	계	(명)
지출액	19.4	12.7	18.9	28.8	20.1	100.0	(10,674)

- 노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는 것이 주거 관련비 지출(43.0%)이며, 다음이 보건의료비(24.7%), 식비(12.0%)의 순서임.
- 노인들의 생활비 주부담자는 (손)자녀 및 배우자(이하 (손)자녀)가 39.5%로 가장 많고 본인 스스로(이하 본인) 34.7%, 배우자 17.5%, 정부 및 사회단체 7.7%(이하 정부)임.
 - 또한 용돈의 경우 또한 (손)자녀 34.2%, 본인 스스로 31.6%, 정부 및 사회단체 27.6%, 배우자 6.2% 순으로, 생활비 부담과는 달리 정부 및 사회단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 개인소득

- 노인의 개인소득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인이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이 13.6%, 사업소득 16.8%, 재산소득 27.5%, 사적이전소득 95.3%, 공적이전 소득인 공적연금 25.3%, 기타급여 8.9%, 기초노령연금 63.9%, 기초보장 6.1% 등임.
-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그 액수가 크지 않아 개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8%에 불과하며,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액수는 18.1만원임.
 - 노후소득의 1차 안전망을 구성하는 공적연금의 경우 약 노인의 1/4이 공적연금급여를 받고 있지만 월평균 액수는 월 47.3만원으로 그리 크지 않음.

<그림 1> 노인개인소득의 소득원별 소유율



3. 노인 부부(무배우인 경우 노인 본인)의 자산 및 부채

- 노인 부부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보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18.6%,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75.0%, 부부 모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는 6.4%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2억 1,742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 부동산의 규모에도 큰 차이가 있어 약 1/3이 1억 미만인 반면, 16.1%는 4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은 전체의 17.8%,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보유한 경우 41.9%, 부부 모두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40.3%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2,554만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음.
 - 금융자산의 경우 약 절반 정도가 금융자산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500만원 미만에 불과함. 반면 5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도 11.9%에 달하고 있음.
- 한편 노인부부의 28.4%가 부채를 갖고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 이름의 부채가 있는 부부는 27.1%, 부부 모두 부채를 갖고 있는 경우는 1.3%이며, 전체 대상자의 평균 부채수준은 1,723만원임.

<표 5> 자산 및 부채 유무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규모(만원)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모두			
부동산	18.6	75.0	6.4	100.0	(10,674)	21,742.2
금융자산	17.8	41.9	40.3	100.0	(10,674)	2,554.3
부채	71.6	27.1	1.3	100.0	(10,674)	1,722.5

<표 6> 자산 및 부채액 분포

부동산	없음	5천만원 미만	5천~1억원 미만	1억~2억원 미만	2억~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계	(명)
		18.7	18.5	14.1	17.2	15.4		
금융자산	없음	2백만원 미만	2백~5백만원 미만	5백~2천만원 미만	2천~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계	(명)
		18.4	20.9	15.9	21.4	11.5		
부채	없음	1천만원 미만	1천~2천만원 미만	2천~5천만원 미만	5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명)
		71.8	5.4	4.4	8.3	5.1		

주) 부동산·금융자산·부채 여부는 응답하였으나 액수는 밝히지 않은 응답자가 있어 유무와 액수에 관한 통계가 상이할 수 있음.

4. 자산활용제도에 대한 태도

- 주택연금의 경우 응답자의 활용의사는 매우 다양하여, 32.4%는 활용할 주택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0.3%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31.4%는 주택은 있으나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
 - 현재 활용중인 경우는 0.2%로 아주 소수이며 향후 활용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5.7%로 적극적인 활용의사를 가진 노인은 약 6%에 불과함.
- 농지연금의 인지율은 41.0%이며 활용할 농지가 없는 노인도 77.4%에 달하고 있음. 활용할 주택이 없는 노인이 32.4%인 것과 비교해볼 때 현실적으로 농지연금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노인의 규모 자체가 주택연금보다 훨씬 적은 상황임
- 활용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상속이며, 다음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소득이 충분해서의 순서임.

<표 7> 노인(65세 이상)의 주택연금/농지연금 인지도 및 활용의사

특성	인지율	활용의사					계	(명)
		활용중	향후 활용의사 있음	활용의사 없음	생각한적 없음	활용할 주택/농지 없음		
주택연금	52.4	0.2	5.7	31.4	30.3	32.4	100.0	(10,521)
농지연금	41.0	0.1	1.4	11.1	10.1	77.4	100.0	(10,529)

<표 8> 노인(65세 이상)의 주택연금/농지연금 활용의사가 없는 이유

특성	자녀상속	자녀반대	제도 잘모름	제도 불신	크게 도움 안됨	소득충분	기타	계	(명)
주택연금	37.2	1.9	3.5	4.0	35.6	17.4	0.4	100.0	(3,295)
농지연금	46.9	1.3	3.2	2.8	29.0	16.5	0.3	100.0	(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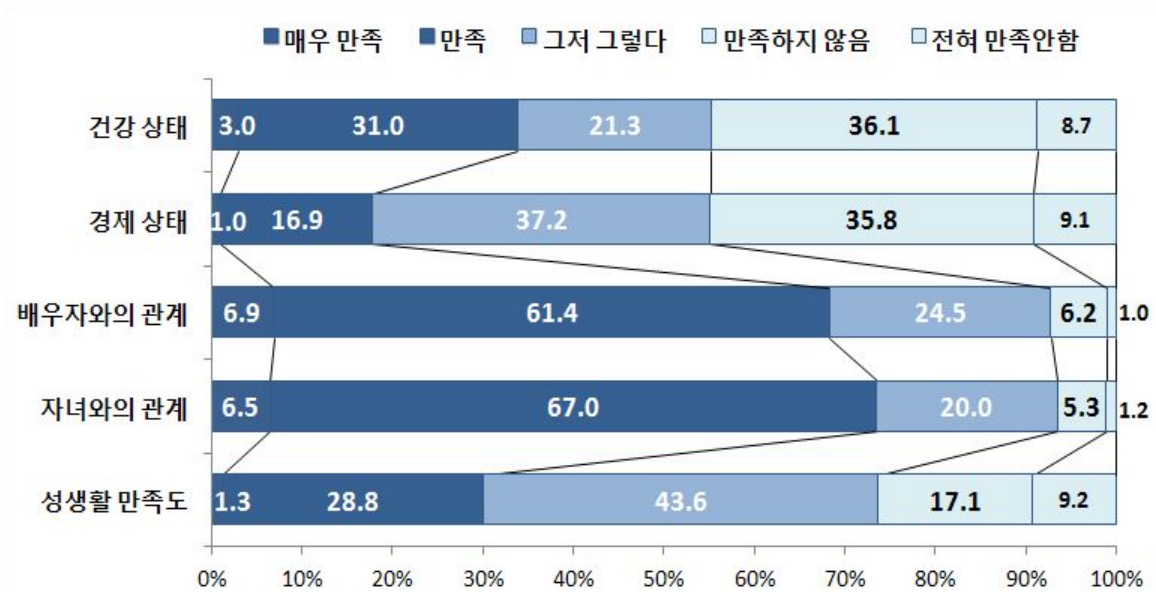
5. 주관적인 경제상태

-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불과하며 46.6%는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경제상태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이 17.9%,로 자녀와의 관계 73.5%, 배우자와의 관계 68.3%, 건강 34.0%에 비하여 제일 낮은 수준임.

6. 정책적 함의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등으로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많이 해소되었음.
- 그러나 아직 노인의 소득수준 자체는 높아지지 않아서 삶의 만족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아, 만족한다는 비율은 17.9%에 불과함.

<그림 2> 노인의 건강, 경제, 배우자와의 관계 등 삶의 만족도



- 한편 노인의 다수가 주거비용과 보건의료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 노후소득의 근간이 되는 공적 연금제도의 개편 등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적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 범위와 액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임
- 따라서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제도적 수정보완적 조치와 더불어 노인의 지출과 관련된 지원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주거비 지원이나 보건의료비 지원 등이 한 방안일 것이며,
-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와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 해가야 할 것임.
 -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6.8%인데 비하여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8.0%로 욕구 대비 참여노인의 규모가 작은 실정임.

II.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실태¹⁾

1. 국민연금 가입현황

□ 연령대별 노후준비 수단

<표 9> 노인노후준비 수단(연령별)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민간연금	저축	부동산 및 주식투자	자녀부양에 의존	기타
30~39세	30.9	13.0	40.0	14.3	0.1	1.6
40~49세	40.6	11.5	34.3	9.0	2.9	1.8
50~59세	52.8	8.5	29.7	5.8	1.4	1.7
60세	50.0	0	40.6	0	0	9.4
합계 (응답자수)	41.8 (1,264)	10.9 (329)	34.6 (1,047)	9.5 (287)	1.5 (46)	1.8 (54)

자료: 윤석명 외(2011)의 실태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임.

□ 국민연금 현황

- 1988년 제도도입 이후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총 가입자 수가 약 2천만명에 달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연금수급자는 약 980만명으로 이 중 노령연금수급자가 80% 이상임.

□ 국민연금 가입실태 : 가구주 기준

- 전체 가구주의 89.8%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납부자가 68.1%, 납부예외자가 29.2%, 체납자가 2.7%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평균 9.84년으로 나타났고, 국민연금 납부형태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부자가 12.69년, 납부예외자는 3.79년, 체납자의 경우 3.70년으로 나타났음.
- 2010년 한 해 동안의 납부개월 수는 평균 8.23개월이며 월평균 국민연금 보험료는 7.84만원으로 나타났음.
- 이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안내 받은 예상연금액은 평균 63.91만원임.

1) 윤석명 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형태

〈표 10〉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형태

(단위 : 명, %)

구분	납부자	납부예외자	체납자	전체
상용직	1,158(96.9)	36(3.0)	1(0.1)	1,195(100.0)
임시직	152(49.4)	143(46.4)	13(4.2)	308(100.0)
일용직	61(18.2)	272(81.0)	3(0.9)	336(100.0)
고용주	88(93.6)	4(4.3)	2(2.1)	94(100.0)
자영업자	348(61.5)	169(29.9)	49(8.7)	566(100.0)

자료 : 윤석명 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11〉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및 월평균 보험료

구분	보험료 납부기간			월평균 보험료		
	평균(년)	중위수	표준오차	금액(만원)	중위수	표준오차
상용직	12.76	12.00	0.19	10.92	10.00	0.14
임시직	7.02	4.40	0.37	4.26	4.00	0.27
일용직	4.88	2.20	0.31	1.86	0.00	0.29
고용주	13.46	13.00	0.65	14.87	14.00	0.87
자영업자	8.72	8.73	0.28	7.42	8.00	0.31

자료 : 윤석명 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개인연금 가입경험을 보면 가입경험이 있는 가구주가 30.8%이고, 납부예외자는 16.1%가 개인연금 가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66.9%로 높게 나타났음.
- 퇴직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5.4%의 가구주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가입률은 10.7%로 나타나 아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표 12〉 개인연금 가입경험 : 가구주

(단위 : 명, %)

구 분		있음	없음	계
국민연금 가입형태	연금가입	842(31.0)	1,875(69.0)	2,717(100.0)
	적용제외자	89(28.9)	219(71.1)	308(100.0)
국민연금 납부형태	납부자	707(38.3)	1,141(61.7)	1,848(100.0)
	납부예외자	128(16.1)	666(83.9)	794(100.0)
	채납자	7(9.3)	68(90.7)	75(100.0)
국민연금 가입종류	사업장가입자	519(39.4)	798(60.6)	1,317(100.0)
	지역가입자	323(23.2)	1,071(76.8)	1,394(100.0)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0	6(100.0)	6(100.0)
	전체	931(30.8)	2,094(69.2)	3,025(100.0)

2. 국민연금 기금 관련 현황

가. 투자현황

□ 국민연금 투자 현황

- 2011년말 시가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348조 8,676억 원(전년대비 7.7% 증가)
 - 금융부문에 348조 4,681억 원(99.9%) 투자
 - 보건복지부문에는 1,080억 원(0.03%) 투자
- 채권과 주식의 비중은 각각 68.2%, 23.5%이며, 대체투자의 비중은 7.8%임.

나. 수익률 현황

□ 국민연금 수익률 현황

- 2011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총수익률은 시가기준 2.31%이고, 기금운용수익금은 시가기준 7조 6,717억 원임.
 - 국민연금기금의 총수익률은 2011년도 경제성장률 3.6%에 비해 1.29%pt., 소비자물가상승률 4.0%에 비해 1.69%pt. 낮은 수준임.
-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3년간 연평균수익률은 시가기준 7.31%임.
 - 1988년~2011년말 현재 누적수익률은 6.64%, 동 기간 기금운용수익금은 시가기준 147조 7,651억 원임.

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1988년 도입 당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70%
- 이후 1998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60%, 2007년 개정으로 50%, 이후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 40%로 조정 예정

기본연금액 = 1.2 (A+B)(1+0.05n)

- * 1.2 = 급여수준 40%를 결정하는 계수('88~98: 2.4, '99~07: 1.8, '08: 1.5, '09~28: 1.2가 각각 적용됨)
- * A : 최근 3년간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 B : 수급직전까지의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월액
- * n : 20년 초과가입년수

〈표 13〉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구분	연금급여의 수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참조
장애연금	장애등급(1~3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장애1등급 100%, 2등급 80%, 3등급 60%)
유족연금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10년미만 40%, 10~19년 50%, 20년 이상 60%)

주: 장애 및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실제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20년으로 인정하고 기본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

- 2011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318만 5천명임.
-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
 -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6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057만 7천명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4〉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이 1.28명일 경우

(단위 천명)

연도	평균수명 기준 가정			평균수명 연장		
	가입자수(가)	노령연금 수급자수(나)	제도 부양비(나/가)	가입자수(가)	노령연금 수급자수(나)	제도 부양비(나/가)
2010	19,117	2,094	11.0%	19,117	2,094	11.0%
2020	19,268	3,406	17.7%	19,273	3,498	18.2%
2030	16,624	5,694	34.3%	16,630	5,930	35.7%
2040	13,704	8,639	63.0%	13,715	8,969	65.4%
2050	11,637	10,355	89.0%	11,652	10,956	94.0%
2060	9,377	10,577	112.8%	9,399	11,466	122.0%
2070	7,999	9,503	118.8%	8,025	10,873	135.5%
2080	6,834	7,921	115.9%	6,861	9,717	141.6%

자료: 윤석명 외(2011),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5〉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이 1.70명일 경우

(단위 천명)

연도	평균수명 기준 가정			평균수명 연장		
	가입자수(가)	노령연금 수급자수(나)	제도 부양비(나/가)	가입자수(가)	노령연금 수급자수(나)	제도 부양비(나/가)
2010	19,117	2,094	11.0%	19,117	2,094	11.0%
2020	19,268	3,406	17.7%	19,273	3,498	18.2%
2030	16,630	5,694	34.2%	16,636	5,930	35.6%
2040	14,070	8,639	61.4%	14,082	8,969	63.7%
2050	12,843	10,355	80.6%	12,860	10,956	85.2%
2060	11,134	10,577	95.0%	11,160	11,466	102.7%
2070	10,406	9,505	91.3%	10,441	10,875	104.2%
2080	9,697	8,337	86.0%	9,736	10,156	104.3%

자료: 윤석명 외(2011),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I.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확대 방안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 중임.
- 저소득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순수자영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matching fund)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와 노후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 기금운영 관련 주요 정책과제 중심으로

○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기금 운용

○ 투자대상의 확대

- 2011년 말 기준 약 349조 원인 적립금이 2043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라 주식·채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탈피하여 투자대상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증가
- 적절한 투자대상을 발굴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

※ 2000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해외투자, 벤처 및 코스닥 투자, 주가지수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음.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으로는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있는 바 수익률 제고 목적만으로 기금 운용을 할 수는 없음.

○ 중기(2012~2016) 자산배분(안) 마련

–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와 기금규모 증대에 따른 국민경제에 대한 과급효과가 커짐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전략 마련이 필요함.

–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안을 마련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는 명확한 목표수익률과 자산별 비중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패러다임을 중장기화 하였음.

– 2011년에 수립한 중기(2012~2016) 자산배분(안)은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은 6.5%로 정하였음.

○ 노후소득 향상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필요

– 우리나라는 외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민연금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역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

– 각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그림 3>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IV.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방향

- 국민연금의 가입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의 관계 설정 필요
 - 본인 부담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고 무기여 방식인 기초노령연금 혜택만 받으려는 수급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세대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특정 세대에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 2012년 OECD 보고서 권고안

- 2012년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노인 집단 내부의 상대적 빈곤을 언급하고 있음.
 - 다른 OECD 회원국은 전체 인구와 노인 인구의 상대빈곤율에 큰 차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상대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OECD 보고서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급여수준이 낮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의 5%, 2012년 현재 월 9만 4,600원), 전체 제도 유지비용은 매우 크면서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노인빈곤 완화에는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

<표 16> 2012년 OECD 권고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으로 통해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수급 대상 축소 - 수급비율 축소가 정치적인 반발로 어렵다면 급여는 저소득 중심으로 인상(일정소득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급여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불안정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급 연령 인상 계획을 앞당기거나 수급연령을 추가로 연장함으로써 재정 불안정 문제 대처 (보험료 인상폭 축소 가능) ○ 제도 적용에서의 잠재적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잠재적 사각지대 축소 - 사회보험료 지원 통해 취약계층의 가입유인 제고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 성실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보장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속성을 강화하여 급여수준 제고

○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준비를 할 기회가 없었던 현 노령층은 가급적 현재의 수급율을 유지하되,
- 급여수준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인상하여,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로 개편 검토
- 부족한 급여수준은 현물급여를 통해 보충

참고자료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²⁾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수급노인의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지만 급여수준이 높지 않아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키기 보다는 빈곤갭을 줄이거나 소득충족률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효과를 가져왔음.
-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절대빈곤 감소는 2%p로 공적연금의 5.4%p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반면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라 빈곤갭이 10.8%p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 이전 제도인 경로 연금의 1.1%p 감소효과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이며, 공적연금(약 7.7%p)과 기초생활보장(약 5.9%p)의 효과를 넘어서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충족률은 0.5627로 증가폭은 0.116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약 11.6%만큼의 소득이 기초노령연금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공적연금의 소득충족률 개선효과인 0.1485에 비해서는 낮지만 상당한 규모의 소득충족률 개선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줌.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2008년 기준)>

구분	절대빈곤 감소율	빈곤갭 비율 변화	소득충족률 증가폭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변화	2%p	10.8%p	0.1160
공적연금으로 인한 변화	5.4%p	7.7%p	0.1485
기초생활보장으로 인한 변화	0.0%p	5.9%p	0.0648

자료: “기초노령연금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변화에 관한 조사”(2009)

- “기초노령연금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변화에 관한 조사”를 활용한 이중차분 방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이 경제활동참여 포기나 근로기간을 축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근로에 대한 의사결정은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 또는 인적자본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수급액이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바꿀 유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적은 규모임
- 또한 “기초노령연금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변화에 관한 조사”를 활용한 이중차분 방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한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수급으로 인하여 시적 이전의 구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증빙되지 않았음.

2) 정경희 외,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정책보고서 2009-25)에 기초하여 있음. 본 결과는 기초노령연금 도입후 1년 남짓한 상황에서 파악된 것으로 제도 성숙에 따른 변화가 발생했을 수 있음.

Ⅲ. 중산층 확대를 위한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

방 하 남 한국연금학회 회장

1. 논의의 배경

- 평균수명은 1980~2010년간 65.7세에서 79.6세로 증가했으나, 주된 일자리 이직은 53세, 평균정년은 57세 수준에서 정체
- 베이비붐 세대(712만명, 임금근로자는 312만명)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으나, 은퇴 준비 미흡 및 낮은 소득대체율*로 은퇴시 취약계층 전략 우려
- * OECD 평균 68.4%, 일본 56.9%, 미국 78.8%, 영국 70%, 한국 42.1%

- 중고령자는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워 비경활인구로 유입되거나 열악한 일자리로 전환
- *월평균 근로소득('09) : 40대 241.9만원, 50대 212.7만원, 60대 106.8만원

- 중고령 인력의 조기 은퇴가 계속될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지출증가, 노인 사회보장비 증가 등으로 그 부담이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어 세대간 갈등이 우려
- * 국민연금 당기적자는 2044년 발생, 기금은 2060년 소진 추계
- * 잠재부양비(15~64세/65세,%) : 9.9('00)→7.0('08)→4.6('20)→2.1('35)→1.4('50)

- 국가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사회 전반적인 악영향 우려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소비·투자위축 및 재정수지악화를 초래하고 잠재 경제성장률 저하 가능성
- * 경제성장률(KDI, '07) : '07년 5.1% → '20년대 2.9% → '30년대 1.6%

- 따라서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중고령 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고용안정을 통해 노후 소득안정과 사회적·국가적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조기퇴직 및 정년보장 실태

가. 한국 기업의 정년제도 현황

- 정년제의 기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음(조준모, 2004: 87). 첫째,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귀속감과 애사심을 갖도록 하는 고용보장적 기능과, 둘째, 일정 연령에 달하는 고령인력을 퇴직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젊은 근로자에게 미래의 승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기업의 수량적 고용조정 기능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Levine, 1988).
-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고용 기업의 87.7%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 조사한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는 약 64.4%가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1>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제 도입 현황: 1988, 2000, 2002, 2011

(단위: 비율, 세)

구분		한국경총 조사 (1988)	노동부 조사 (2000)	노동연구원 조사 (2002)	노동연구원 조사 (2011)
정년제 도입여부	전산업	92.8	63.1	64.4	87.7
	제조업	93.5	60.5	65.5	87.4
	300인 미만	87.4	55.7	61.9	86.9
	300인 이상	98.4	96.1	71.1	90.1
일률정년제	도입비율	50.6	-	85.1	88.6
	평균연령	55.2	-	56.5	58.0

주: 경총의 경우 표본 가운데 100인 미만 사업장이 15.4%에 불과한 반면, 노동부(2000)와 한국노동연구원(2002)은 각각 5인 이상 및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2011)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기업 규모 분포가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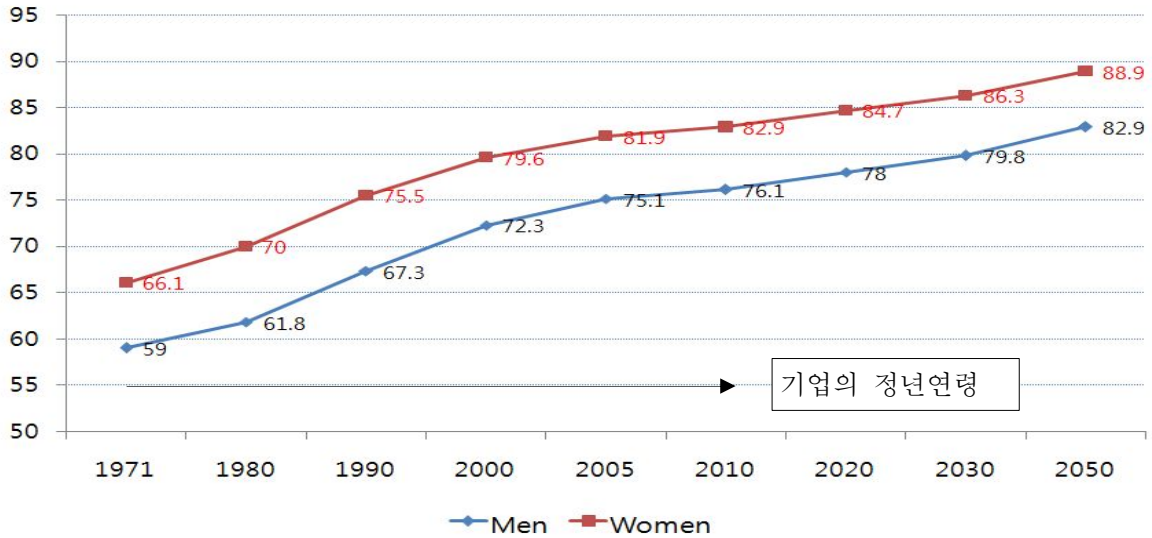
출처: 김동배(2003: 191), 정진호 외(2011).

- 한국의 정년제도는 1970-80년대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이 60세 내외이던 시절에는 일종의 고용보장의 장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한국도 인구와 노동력의 고령화가 소리없이 진행되는 사이 2010년 현재 남성의 평균수명이 76세에 이르러 과거보다 16세 이상 증가하였는 바 퇴직 이후 길어진 노후생계 문제가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심각한 도전으로 떠오르게 되었음

III. 중산층 확대를 위한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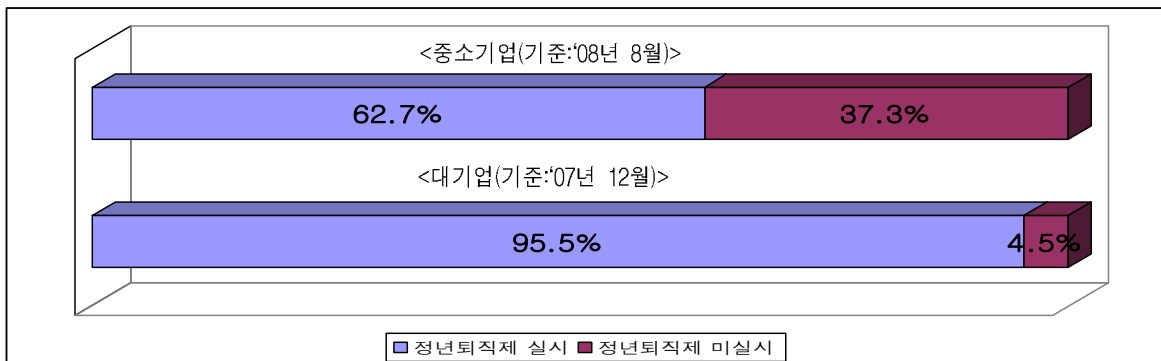
- 더욱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내 고령인력이 구조조정의 일차적 타겟으로 잡히면서 짧은 정년과 정년 이전의 반강제적 조기퇴직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림 1] 한국 인구의 평균수명 추이와 전망 vs. 기업의 정년퇴직 연령



-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조사, 2008」와 노동부의, 「300인 이상 사업장 고령자 고용현황조사 분석, 2008」 자료에 기반
-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된 300개 사업체 중 188개 사업체(62.7%)가 정년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95.5%가 정년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즉 중소기업의 약 30%는 정년 규정 자체가 없음)

[그림 2] 정년퇴직제 도입현황에 대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



자료: 1) 중소기업: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조사, 2008」
 2) 대기업 : 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 고령자 고용현황조사 분석, 2008」 (2007. 12)

III. 중산층 확대를 위한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

- 구체적으로 사업체규모가 30~49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40.7%가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반해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1.6%만이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대기업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위 조사결과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정년연령 자체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인사관리가 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규정된 정년분포를 보면 <표 2>와 같음. 단일정년 실시 중소기업들의 경우 평균정년이 57.1세로 추정되며, 분포상으로 55세 정년이 가장 많은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58세로 22.9%, 다음은 60세가 17.8%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규정한 비율은 약 23%)
- 대기업의 경우에는 단일정년을 정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약 42.8%가 5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23.5%가 58세, 다음으로 약 13%가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년분포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한 비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약 16%)
- 실제 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71.2(남)세로 OECD 63.5세와 괴리가 있으며, 약 15년 이상 불안정한 고용상태 유지(OECD, '07)
- * '02~'07년 평균(세) : 멕시코 73, 일본 69.5, 미국 64.6, 영국 63.2, 프랑스 58.7

<표 2>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의 정년현황에 대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교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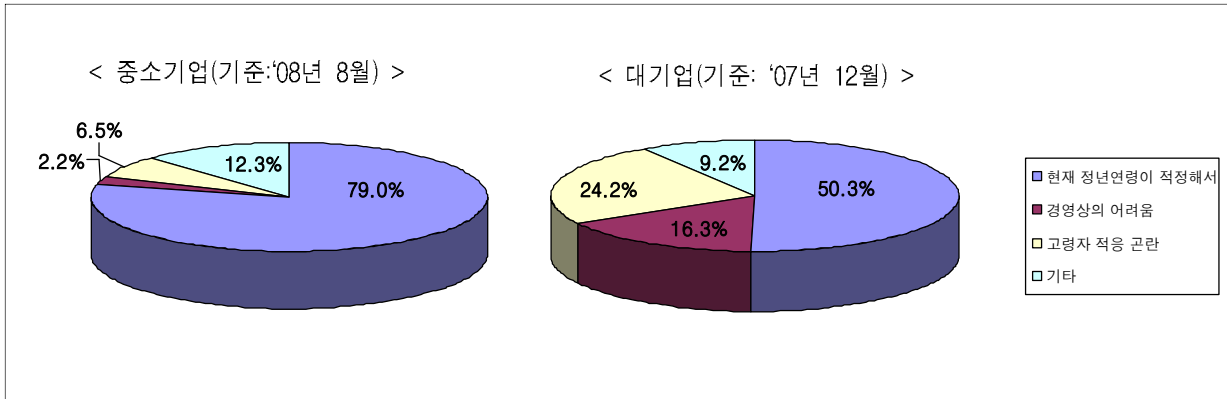
	평균 정년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전체
중소기업 (2008년)	57.06	5 (3.2)	67 (42.7)	4 (2.6)	6 (3.8)	36 (22.9)	1 (0.6)	28 (17.8)	4 (2.6)	-	1 (0.6)	-	4 (2.6)	157 (100.0)
대기업 (2007년)	56.95	7 (0.5)	600 (42.8)	68 (4.8)	138 (9.8)	329 (23.5)	31 (2.2)	185 (13.2)	15 (1.1)	4 (0.3)	4 (0.3)	-	21 (1.5)	1,402 (100.0)

자료: 1) 중소기업: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조사, 2008」
 2) 대기업 : 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 고령자 고용현황조사 분석, 2008」(2007. 12)

- 향후 정년연장 계획 여부에 대해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정년연장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79%의 중소기업과 50%의 대기

업이 '현재 정년 연령이 적정하므로' 연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고령자 적응곤란(24.2%), '경영상의 어려움'(16.3%) 순으로 응답함

[그림 3] 정년 연장 계획이 없는 이유



자료: 1) 중소기업: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조사, 2008」
 2) 대기업 : 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 고령자 고용현황조사 분석, 2008」(2007. 12)

-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년제도 유무와 상관없이 가장 적절한 정년퇴직연령은 '60세'라는 의견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65세 이상'이 25.0%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55% 이상이 60세 이상이 가장 적절한 정년이라고 응답

나. 조기·명예퇴직 현황과 추이

- 명예퇴직제도는 능력주의와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된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보편화된 연공서열제와 정년제도와 함께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인력조정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명예퇴직제는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일정액의 보상을 받고 미리 퇴직하는 형태를 말하며 기업에 따라 희망퇴직제, 조기퇴직제, 선택정년제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함
- 우리나라 명퇴의 역사는 1974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효시로 알려져 있음
- 명퇴제도는 공기업 부문으로 확산되어 1985년에 대한주택공사가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한국통신, 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 도입하였으며 이

어서 1992년에는 조흥은행을 선두로 한일은행, 상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금융권이 명퇴를 실시

-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던 명퇴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은 1996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그룹의 한 제조업 계열사가 종업원의 25%를 명퇴라는 이름으로 감원시킨 것이 계기가 되었음
- 그 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명퇴 바람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실시되었음
- 당시 우리 기업들이 명퇴를 도입한 배경으로는 인력관리와 임금관리의 경직성을 들 수 있음.
- 세계화, 정보화시대가 태동하면서 저임금 고성장의 이점이 사라지고 고임금 저성장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했음
- 그러나 노조의 반대로 정리해고가 어려웠으며 기업의 임금체계 역시 연공급이 주류였기 때문에 연령과 근속 연수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함으로써 임금의 동기 유발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승진적체 현상도 문제
- 이렇게 연령-근속과 함께 불어나는 인건비와 경직적 인력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의 일환으로 명퇴제도를 활용하기에 이르렀음

3.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실태

가. 임금피크제도

- 고령자의 조기퇴직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주의 임금 부담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고령자 고용친화적 임금체계인 임금피크제의 활성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2006년부터 노사합의로 56세(2006년~2007년은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피크임금보다 10% 이상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54세부터 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별 150만원)한도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

Ⅲ. 중산층 확대를 위한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

- 2008년에는 당초 2008년 12월까지의 한시제도였던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제도를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시제도로 변경(2008년 9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하고 임금감액 제외사유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삭제(2008년 9월 동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도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확대를 결정하고, '50+세대 일자리대책'을 마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및 기업의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 강화를 주요정책으로 채택
-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0년 12월 31일, 시행일 2011년 1월 1일) 하여 종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명칭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 유형별 특색에 맞게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년 보장형지원은 폐지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2년 1월 13일)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임금감액률 요건을 완화(20%→10%)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및 지원을 강화하였음

나. 임금피크제 도입실태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피크제 도입비율은 2010년 기준 12.1%로 나타났으며, 도입 유형별로는 재고용형이 35.6%, 정년 연장형이 35.4%, 정년 보장형은 27.1%로 조사됨

<표 3> 임금피크제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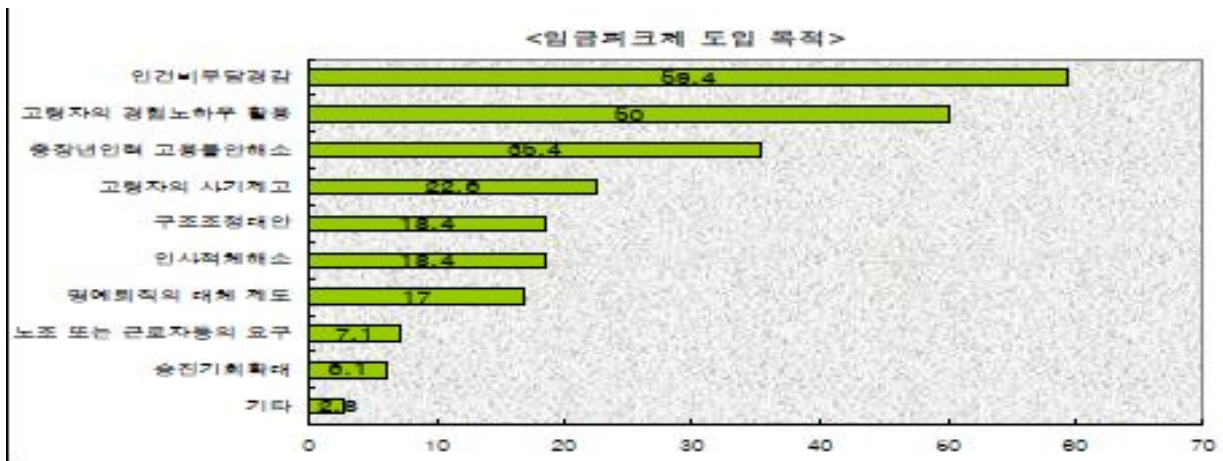
연도별	지원기업수	지원인원수	지원금액
2006년	40	226	579
2007년	72	584	1,538
2008년	98	997	3,032
2009년	135	1,497	6,489
2010년	158	1,869	7,861
2011년	176	2,843	8,624

※ 출처: 고용노동부(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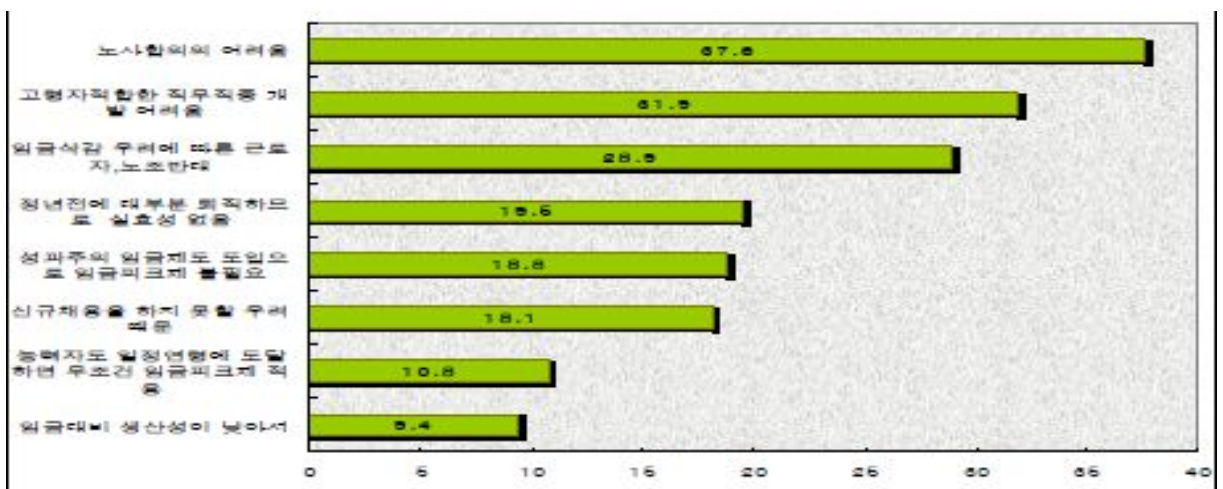
III. 중산층 확대를 위한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

-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피크제도 도입실태 조사(100인 이상 648개 기업) 결과, 기업의 임금피크제도 도입은 (1)(고령인력의) 인건비 부담경감이 가장 주된 이유였고, 그 다음이 (2)고령자의 경험노하우 활용, (3)중장년 인력의 고용불안 해소 등의 순이었음
- 반대로 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노사합의의 어려움이 가장 주된 이유였고, 그 다음으로 (2)고령자 적합 직무 직종개발 어려움, (3)임금삭감에 따른 근로자, 노조의 반대, (4)정년전 대부분 퇴직 등의 순이었음
- 기업현장에서 정년제도 개선과 임금피크제도가 저조한 주된 이유는 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의 어려움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임금피크제 도입 이유



[그림 5] 임금피크제 도입하지 않은 이유



4.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활성화

-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완화,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재검토 등을 통해 제도 확산을 유도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요건 재검토
- * 최초 지원연령(54세) 및 임금 감액율(10%)의 적정성
- * 개인별 지원제한 소득(5760만원) 및 연간 지원 한도액(600만원) 재검토
-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시 지원방식 등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보조금제도]

오스트리아:	50~55세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용자의 실업보험료를 절반으로 삭감해 주며, 5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보험료 전체 면제. 이 보조금은 오스트리아의 이른바 Bonus-Malus 시스템의 일환으로 Malus는 50세 이상 근로자 해고에 대한 벌과금이며 해고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벌과금도 달라짐
벨 기 에:	45세 이상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용자는 5년 동안 사회보장기여금을 부분적으로 면제. 또한 이렇게 신규 채용 된 근로자는 'Activa'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으로서 사용자는 월간 EUR 500까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음
덴 마 크:	서비스일자리제도(Service Jobs Scheme)에 따라 18개월 이상 장기실직 상태에 있는 48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지방정부는 연간 DKR 100,000의 무기한 임금보조금을 받음
프 랑 스:	5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촉진계약(Contrat Initiative Emploi)'을 활용할 수 있음. 보조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사용자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삭감하는 것으로, 총 최저임금의 약 40%에 해당. 일반적으로 종신고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보조금이 지급되며 50~64세의 장애인 또는 1년 이상 실업상태였거나 공적부조를 받았던 사람의 경우 보조금이 무기한으로 지급됨
독 일: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는 '통합 보조금(Eingliederungszuschusse)'이 지급되며 보조금은 임금의 최대 50%에 해당
스 웨 덴:	특별고용보조금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에게 최소 2년 동안 실업상태로 있는 57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장려. 사용자에게 최대 24개월간, 인건비의 최대 75%, 일간 최대 SEK 525, 즉 월간 SEK 10,500(전일제근로자의 평균급여의 약 절반)까지 보조금이 지급됨

나. 연공서열적 임금직무체계의 개혁

- 현재 우리 기업들은 내부 인력의 고령화와 장기 근속자의 증가,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및 인사적체의 문제를 반강제적 '조기퇴직' 제도를 통해 해소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을 통해 정년 이전에 고령인력에 대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떨어내기'(shedding off older workers)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조기퇴직제도는 기업이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업 HRM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인구와 노동력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거의 40%를 50세 이상의 준고령자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현재와 같이 50대 중반 조기퇴직, 60대 중반까지 저소득-불안정한 자영업으로 이어지는 근로생애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
 - *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조기정년퇴직제도는 영세 자영업부문의 과열팽창과 생산성저하; 준비안된 퇴직으로 인한 노후빈곤의 문제; 가장의 실업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중산층의 감소; 기여자의 감소와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공적연금의 재정 악화 등 인구와 노동력의 고령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누적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기업 인사관리의 주요 핵심 이슈는 고령인력에 대한 HRM이 될 것이나 우리 기업들은 고령인력의 인사관리와 퇴직관리에 관한 경험과 know-how가 부족하고 동시에 직렬적 직급체계와 연공급적 임금체계가 아직 강하게 존재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 임금체계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확산, 중고령자 고용회피 및 조기퇴직 압력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 임금직무체계를 직무·성과·능력중심으로 전환토록 유도하여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확보 필요
- 중·고령자의 생산성을 크게 상회하는 연공임금제하의 고임금구조가 조기퇴직의 원인이라는 주장(*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장의 60%이상이 연공임금제를 채택)
- 중·고령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서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임금피크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
- 최근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공급 중심의 호봉제 임금체계가 우세

* '06년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중 50.6%가 연봉제, 30.7%가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56.1%는 호봉제를 병행 운영

다. 연령차별적 정년제도와 기업문화의 개혁

- 우리나라는 강제정년제도가 보편적인 현상이며 정년도 서구에 비해 아주 짧아 100세시대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구축'이라는 비전과 역행하고 있는 현실임
- 중·고령자들은 정년퇴직 후 최종 은퇴를 하기 전까지 자영업을 하거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근로생애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정년퇴직제도는 일정연령을 정하여 강제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인사관리제도로 연령차별적 요소가 강하며 무엇보다 ILO(1980-제162호권고)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정년이 존재할 경우 대부분 정년퇴직연령은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65세 정년이 표준이나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많은 나라들이 향후 정년을 연장할 예정임(예: 영국, 독일 등 67세로 연장예정)
- 미국(1967), 영국(2006), 호주(1996) 등 선진국에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는 연령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로 보아 강제정년의 설정을 제한하거나 정년퇴직제도 자체를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67년에 이미 ADEA(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의 제정을 통해 65세 미만의 강제퇴직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한 이후 1978년에는 강제퇴직연령의 하한이 70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1986년에는 연령에 기반한 강제퇴직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함
- 일본의 경우, 연령차별과는 별개의 문제로 정년제의 제도적 개선을 시행: 즉, 연금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60세→65세)과 연계하여 우선,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0세 정년을 의무화하였고, 이어서 2004년 개정에서는 65세까지의 단계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의 기간을 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1)정년연장, (2)정년 후 재고용, (3)정년제 폐지 간의 선택옵션을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함

- 최근(2011) 정부는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년의무화 추진 계획(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전략)

III. 중산층 확대를 위한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

- 아울러 연령을 이유로 한 채용, 배치, 해고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함(2008.3)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환경이나 법제도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미국이나, 같이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한 일률적 정년퇴직제도의 금지를 입법화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최소정년의무화의 추진하는 방안은 (1)단계로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년의 보장을 위한 노동시장법제도(임금·직무 등)의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2)단계로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최소의무정년제도를 도입한 후, (3)단계로,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과 법적 최소정년을 연계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임: 이 경우 규정된 정년과 최소의무 정년간의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과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분담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정년보장과 고령자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체계의 구축과 능력·성과주의 임금제도의 확산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선(시장)개혁-후(제도)입법을 주장하는 기존의 주장들이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현실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정책과 제도가 기업 현장과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온 후 규제적인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의 경우는 대부분 그 반대가 주류를 이룸: 즉 정년제도의 개선(최소정년의무화)이 임금직무체계 개혁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임

❖ 주요국가의 정년제도 현황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정년	없음	65세	60세	65세(고용의무)
정년 관련 법령 규정	연령 이유로 채용·해고·보수 등 차별금지 ('86년)	연령 이유로 해고는 위법 (65세 이상은 제외, 06년)	연금수급 연령 하회하는 정년설정 금지 ('01년)	기업은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중 선택('04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5세 ('27년에 67세로 상향조정)	여성 60세, 남성 65세 (여성, 단계적 상향 → '20년에 65세)	60세 ('83년 하향조정, 65세 → 60세)	63세 ('13년에 65세로 상향조정)

* 한국 : '91년 60세 정년설정 노력의무 부과(연금수급 연령은 '13년 61세 → '33년 65세)

❖ 일본 경우 '70년대부터 단계적 노력을 기울여 '04년 현재 99%의 기업이 60세 이상 정년 설정 → '06년부터는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실시 의무화

* 65세까지 ①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정년 후 재고용 또는 ③ 정년폐지 조치 중 택일

라. 연령에 관계없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 구축

-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향후 노동력인구의 -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일본의 경제 및 사회에 활력을 유지해 가기 위해 근로의욕을 가진 고연령자가 오랜 세월을 걸쳐 기른 지식과 경험을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이미, 「고연령자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주는 65세까지의 고연령자의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2012년에는 이른바 베이비붐세대가 65세에 도달함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제와 정년의 폐지를 보급, 촉진하여 베이비붐세대가 적어도 70세까지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당면의 중요한 과제로서 부상
- **(정년연장 장려금)**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①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규정을 폐지 또는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70세 이상까지의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을 실시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② 지역에 과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의 모델이 될 만한 대책을 실시한 사업주의 지원, ③ 사업주 단체가 산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 고연령자의 계속고용에 대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정년연장 등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도입, 실시중
- **(노동시장 제도의 개혁)** 연령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연령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정년제도 및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연금제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 일본의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에 관한 유식자회의 보고'(2003. 1)에서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포함한 고용 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고용기회를 유지·증대시키면서, 지나치게 연령에 치우친 일본의 고용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의욕과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정리하고 있음
- 이러한 고용시스템의 구축은 중고령자의 고용과 퇴직이라는 시스템의 일부만을

Ⅲ. 중산층 확대를 위한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임금, 직무 등 고용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용, 능력개발, 처우, 근무방식, 퇴직 등 고용시스템 전체를 다시 살펴보고, 향후의 바람직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함

- 필요한 조건 정비로서 ①직무의 명확화와 사회적 능력 평가 시스템의 확립, ②능력·인사처우제도의 확립 등 임금·직무·보상 제도의 재검토, ③능력을 살린 다양한 근무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정비, ④채용과 퇴직에 관계되는 조건 정비(모집·채용시 연령제한의 시정을 위한 노력, 정년인상과 계속고용제도의 도입·개선의 추진 등) 등을 제언하고 있음

참고문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노동연구원, 2005.11.30
- 김동배 (2005),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노동리뷰 2005년 12월호』, 노동연구원.
- 김정환(2003),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김정환·김동배, 『중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제 개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수행), 노동부용역보고서, 2005.12
- 김정환·임효창,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수행), 노동부용역보고서, 2008.5
-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200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노동연구원.
- 엄동욱·이상우·배노조(200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이정우(2006), 『고령자의 점진적 은퇴 지원을 위한 보충소득지원제도 연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노동부용역보고서.
- 장지연 (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 노동연구원.
- 장지연·김대일·신동균·조준모·조용만·김정환 (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II)』, 노동연구원.
- 정진호·김정환·김동배·이인재(2011),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노동연구원.
- 조용만·김진·김태선(2006),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노동부정책연구보고서.
- 조용만(200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 조준모/이승길, "고령층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I)』 (최경수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1(2004. 12), 71-169면
- 조준모·이해춘·이승길·김선웅, 『고용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노동부용역보고서, 2004. 10
- ** 이해춘,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의 경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은 위의 노동부용역보고서의 한 장임
- 태원유 외, 『퇴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